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사 건 2026카합20328 소스코드인도단행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알파피플

채 무 자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귀원의 석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

— 다 음 —

변경 후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산출물, 제2항 기재 산출물과 제3항 기재 인수인계 자료를 인도하라¹⁾.

1) [다른 사건의 기재례]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203165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컴퓨터프로그램 목록 기재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을 인도하라.

- | |
|--|
| <p>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7. 체결된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한 DongsungDid_I(빈소관리프로그램), DongsungDid_I(빈소관리사용자프로그램)</p> <p>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18. 및 같은 해 8. 11. 각 체결된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한 DidRemoteUser(빈소안내 및 영정정보 입력 및 관리프로그램), DongsungDid_II(단말 라즈베리PC 등록연결 관리프로그램) 끝.</p>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나66075 판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스코드를 인도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73157(본소), 2016가단5270141(반소)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별지 2 목록 기재 구성요소를 인도하라.

-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전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개발 결과물을 인도하라.
 -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합689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스코드와 제(2)항 기재 기술자료 등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고지하라.

2026. 4. 16.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Mi법무법인민후

담당변호사 김 경 환

담당변호사 양 진 영

담당변호사 최 주 선

담당변호사 김 송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다) 귀중

[별지]

목 록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25. 5. 12. 체결된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인플루언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1. 채무자가 위 외주용역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발한 '인플루언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베이스, API 문서 등 산출물
2.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인플루언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운용 또는 동작에 필요한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등 산출물
3. '인플루언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잔여 개발 진행에 필요한 기술문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등 인수인계 자료

끝.